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 서 울 특 별 시 종 합 발 간 실
전 화 75-6090

제 575 호

1976. 9. 2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66 호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 … 3
◎ 고 시
제 249 호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허가 …… 26
제 250 호 : 도시계획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및지적승인 … 26
제 251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지적승인 …… 27
◎ 공 고
제 226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 …… 28
제 227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 28
제 228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 37
제 230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일부변경지정공고 …… 35
제 354 호(영등포구공고) 공인신조 및 분실공고 …… 35
◎ 사 령 …… 36
◎ 정 정 …… 3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929

122

3b-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 년 9 월 27 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066 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 63 조제 2 항, 제 65 조제 2 항, 제 6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대원의 정원 임용, 훈련, 검열, 복제, 복무, 보수 및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①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②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의용소방대 산하에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명칭) ①의용소방대 (이하 〃대〃라 한다) 의 명칭은 〃의용소방대〃 앞에 당해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소방서의 명칭을 붙인다.

②의용소방지대 (이하 〃지대〃라 한다) 의 명칭은 당해의용소방대 지대라 칭하되 지대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제 1 , 제 2 등 순위를 붙인다.

제 4 조 (대의 기) 대의 기는 별표 1 에 의한 제식의 기를 사용한다.

제 2 장　조직 및 정원

제 5 조 (임용기준) 대는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 지원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6 조 (조직) ①대에는 대장 1 명, 부대장 1 명 , 부장 , 반장 및 일반대

원을 둔다.

②지대에는 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제7조(대장등의 임무)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지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대의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대 또는 지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 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방반, 구호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 훈련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소방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부에 반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부와 반의 정원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의 정원) 대별정원은 50명으로 하며, 지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대별 인원은 20명내외로 한다.

제3장 임 용

제10조(대원의 임용) ①대장, 부대장 및 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②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결격사유) 지방소방공무원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12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때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때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소방에 관한 비행이 있을 때

제13조(대원의 신분증명) ①소방서장은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및교육훈련

제14조(복무의무)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

②소방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대원은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단체쟁의 및 업무와 관계없는 집단적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6조(복제) ①대원의 복제는 별표3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복제는 시 예산으로 조제하여 대원에게 대여한다.

제17조(복무감독)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18조(검열)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년1회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및 훈련)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의경비, 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제20조(대의경비) 대원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에 편성한다.

제21조(출동수당) ①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였거나 타 대의 대원이 응원 출동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 300원으로 한다.

제22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제23조(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를 하게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5급을류 1호봉의 봉급액 5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장해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해의 등급 및 신체장해의 등급별 장해보상금은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③별표4에 게기된 신체장해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 25 조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당시에 장제를 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5급을류 1호봉의 봉급월액 12월분을 지급한다.

제 26 조 (재해보상청구) ①제 23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제 2 호서식 내지 별지제 4 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서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보수조례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잠정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하던 대의 기, 신분증명 및 복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 발급 또는 대여할 때까지 유효하다.

0932

26-b

<별표 1>

의용소방대 기(도안)

(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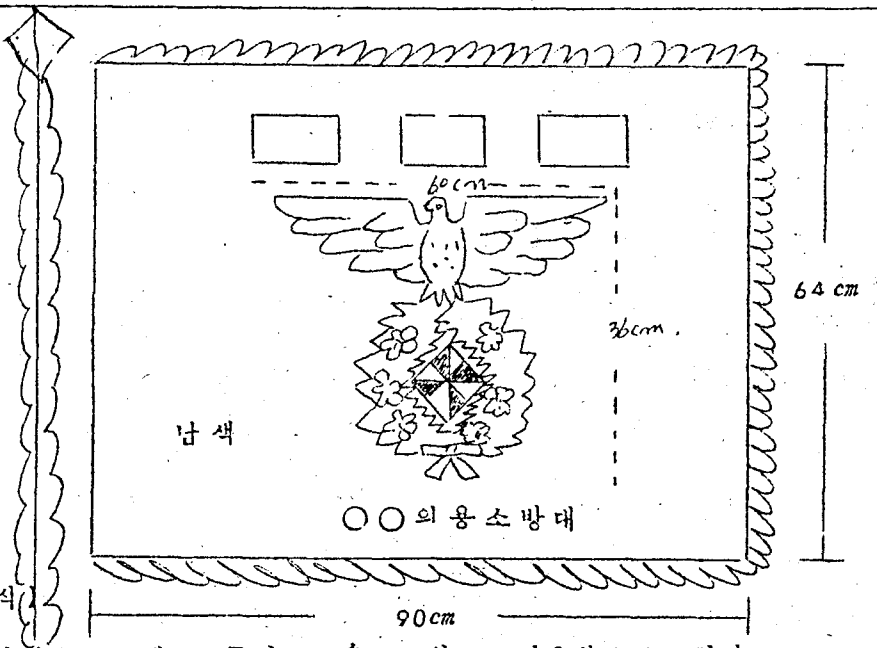

1. 기봉은 은색 도금한 금속제로서 3각유봉으로 한다.
2. 기폭은 가로 90센치미터, 세로 64센치미터
3. 지질은 2종 면직 또는 후랏드지
4. 색: 감 색
5. 휘장: 기 중앙에 의용소방대 모형형과 동일의 휘장을 배열한다. 다만, 비둘기는 황색으로 한다.
6. 깃: 황색면사 교연 (1센치미터)
7. 술: 황색 면선사 교연 (12센치미터)
8. 기대: 길이 150센치미터 흑색칠
9. 대명: 기면상부는 자획방 약 8센치미터 크기의 소속 시·군명을, 기면하부는 자획 약 6센치미터 크기의 대명을 좌로부터 배열한다. 다만, 문자의 간격은 기면을 중심으로 보기좋게 표시한다.

(별표 2)

의 용 소 방 대 업 무 분 장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 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보급반	1. 대의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소방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수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호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별표 3)

복 제 (표 지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장이하	도 형
			지질	금 색 금 속 지	은색금속지	
표	계	정		1. 대장의 것 1번 1.7 센치미터의 능형속에 "소"자 4개를 0.2센치미터의 간격으로 한줄로 배열한다.	1. 반장의 것 대장의 것과 같은 것 1개로 한다.	별도 1 (가) 계급장 (1) 대장의 것 (2) 부대장 및 지대장의 것 (3) 부장의 것 (4) 반장의 것
지	급		제	2. 부대장 및 지대장의 것 위와 같은 것 3개를 0.2 센치미터 간격으로 배열한다.	2. 대원 해당없음.	
장	장	장	식	3. 부장의 것 위와 같은 것 2개로 한다.		

0933

-24-3

구 분			부 장 이 상	반장이하	도 형
양장	지질		정장과 같이 한다.	정장과 같이 한다.	(나)금 장
	제식		각급 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를 당해 정장의 3분의 2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금장	지질		금색금속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식		세로 1.3센치미터 가로 2.5 센치미터 크기 단형으로서 우편에 구, 시, 읍, 면명 좌편에 "의소"의 문지를 횡서로 양각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소 방 모)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방모	정모	지질	1. 카 바 동모는 흑감색모구렛빠지 하모는 쥐색비니루지 2. 전비와 턱끈은 흑색비니루지 3. 쟈바라는 흑색 견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제식	1. 모자의 천정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철사를 넣어 팽팽하게 한다. 2. 모자테의 주위 외면에는 넓이 4센치미터의 쟈바라를 두루고 외면에는 비니루 땀받이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모자테의 전반부에 턱끈만 두른다.	별도 2 소방모 (가)정모

구 분			부 장 이 상	부장이하	도 형
소방모			3. 모자테의 전반부에는 금색 금속사로짠 넓이 1.2센치미터의 따로만든 턱끈신 금선을, 후반부에는 넓이 1.5센치미터의 턱끈을 두루고 양끝에 귀단추를 한다. 4. 전비는 반원형으로 한다.		(나) 작업모
		지질	국방색 나이론직지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제식	원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방수모	지질	흑색또는 다색포 합성화이바지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다) 방수모
		제식	헬멜형으로 외면과 내면을 포지합성화이바지로 한다.		
모장	정장	지질	바탕은 흑색나사지 자수부분은 금색금속지	금색금속지	(라) 모장
		제식	직경 4.5센치미터의 무궁화잎에 싸인 무궁화 6개 (좌우각 3개)로된 원형중앙에높이 1.5센치미터의 능형속에 관창 4개를 교차시킨 모양을 배치하고 그외부에 넓이 8센치미터 높이 2.2센치미터의 날개를 편 비둘기모양을 자주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다만, 주조한다.	

구 분			부 장 이 상	반장이하	도 형
	약장	지질	정상과 같이 한다.	정상과같이한다.	
		제식	정상과같이 한다. 다만 크기는 정상의 3분의2로 한다.	부상이상의것과같이한다.	

(제 복)

구 분				부 장 이 상	반장이하	도 형
제복	정복	상의	지질	동복은 흑감색 모구레빠·또는 라사사지, 하복은쥐색, 모포라 또는 라사지	부장의상의것과같이한다.	별도3 제복 (가)동정복 상의 (1)부장이상 (2)반장이하 (나)하정복 상의 (1)전면 (2)배면
			제식	1. 벌림깃에 전면중앙에 한줄 4개의단추를 단다. 2. 동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절개한다. 3. 홑무와복부 각좌우에 동복은 속붙임, 하복은 겉붙임의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단추를 단다. 4. 어깨에 견장지를붙이고 견장단추를 단다. 5. 하복은 뒤허리부분에 넓이 5센치미터의 띠를 붙인다.	부장이상의것과같이한다. 다만, 동복은 꺽음깃으로 하고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하의	지질	상의와 같이한다.	부장이상의것과같이한다.	
			제식	1. 긴바지로한다. 2. 전면우측에 옆으로 속붙임작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각각길이로 속붙임주머니를 1개씩 붙인다.	부장이상의것과같이한다.	

구 분			부 장 이 상	부장이하	도 형
작업복	상의		3. 후면 좌우에 각각 옆으로 숙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지질	국방색 목면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다) 작업복 상의
		제식	1. 노타이식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전면 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2. 긴소매로 하고 흉부좌우에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하의	지질	상의와 같음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2) 하의 ㄱ. 전면 ㄴ. 후면
		제식	정복의 하의와 같이 한다. 좌우와 후면 좌우에 겉붙임주머니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2) 하의 ㄱ. 전면 ㄴ. 후면
	방수복	지질	국방색 고무포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제식	1. 길이는 뒷굽으로부터 약 2.5 센치미터 격하도록 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관절로부터 3 센치미터 길게 한다. 3. 골덴지꺽음깃에 흉부 및 배부에 방수고무지를 덧붙이고 전면 좌우에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인다. 4. 소매끝 내부에 약 10 센치미터의 모직 소매줄림을 붙인다 5. 전면에 고루 단추 5개를 한줄로 단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다) 방수복 • (1) 전 면 (2) 후 면

0935

비 고

1. 정복 상의의 전면 중앙 단추의 배열 간격은 최하단 단추가 허리 띠박클 하부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 배열한다.

2. 단추는 다음 표에 의한 단추를 사용한다.

구분 / 복별	소방단추			불단추		비고
	대	중	소	중	소	
정복		○				
작업복					○	
주머니단추 (정복)			○			상의
견장단추			○			
모자단추			○			
하의단추					○	

(소　　방　　화)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방화	단화	지질	흑색복수지 (피혁)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별 도 4 (개)단 화 (내)방수화
		제식	무장식단화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방수화	지질	천연 및 합성고무, 범포지, 메리야스지 및 철판	〃	
		제식	1. 길이는 약 85 센치미터로 대퇴부까지 올라오게 하고 2. 바닥손은 철판을 넣으며 3. 상부로부터 약 50 센치미터는 메리야스지에 고무를 입힌 고무판을 안으로 붙인다. 4. 상단외측에 요대에 연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의 고리끈을 단다.	〃	
부속물			1. 박클은 금색 금속지 2. 띠는 동복은 흑색, 하복은 취색 목면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나)혀리띠
			1. 박　　클 세로 3.7 센치미터 가로 5.3 센치미터 군용 부라스 박클로 한다. 2. 벨　　트 너비 3.2 센치미터 두께 0.9 센치미터의 적당한 길이로 하고 끝에 1.5 센치미터의 철편을 안밖으로 붙인다.		

0936

(부 속 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부속물	넥타이	지질	동복용은 흑색, 하복용은 쥐색 모직지	해당없음.	별표 5 (개)단추
		제식	일반 보통 넥타이와 같이한다.	해당없음.	
	단추	지질	금색 금속지	부장이상과 같이한다.	
		제식	1. 직경 2.3 센치미터 (소형 1.5 센치미터) 높이 0.75 센치미터의 반구형으로 가장자리를 넓이 0.2 센치미터 (소형 0.1 센치미터)의 로프형으로 하고 그안에 "소"자 한글표를 배치한다. 2. 저면의 중앙에 직경 0.25 센치미터 (소형 0.2 센치미터)의 고리를 단다.		

별도 1 표 지 장

(개) 계 급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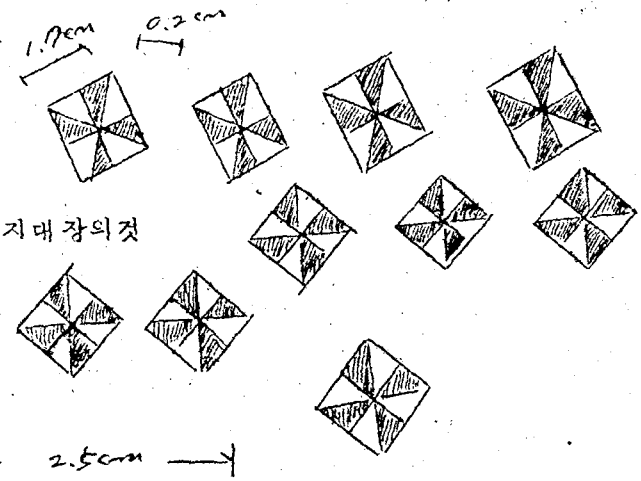

(1) 대장의것

(2) 부대장 및 지대장의것

(3) 부장의것

(4) 반장의것

(내) 금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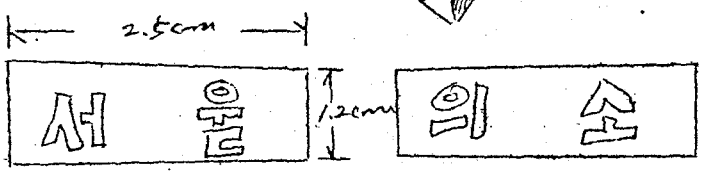

<별표 2>　소 방 모

(가) 정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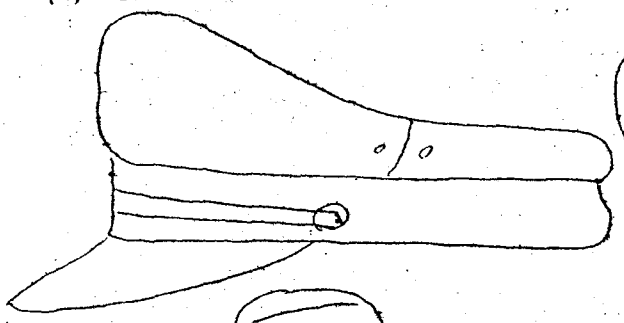

(나) 작업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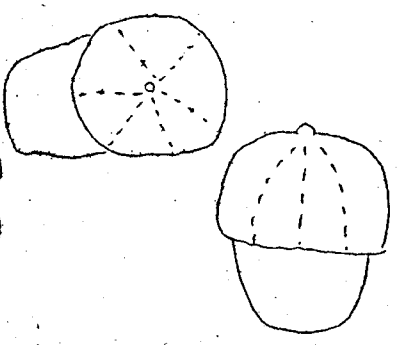

(다) 방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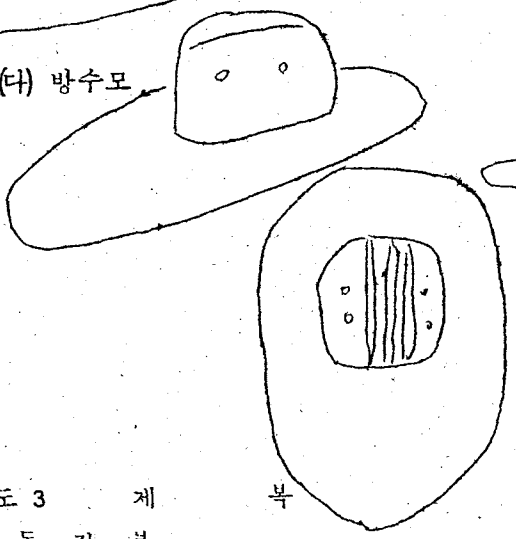

(라) 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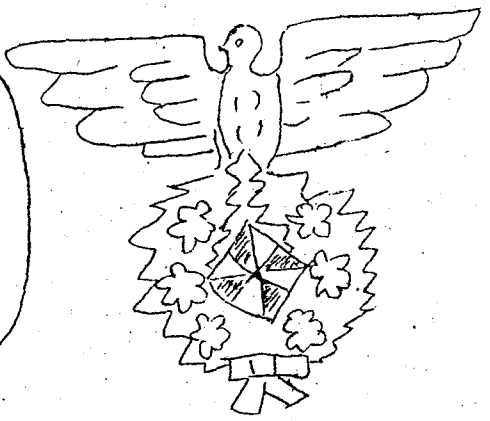

별도 3　　제　　복

(가) 동 정 복

(개) 부 장 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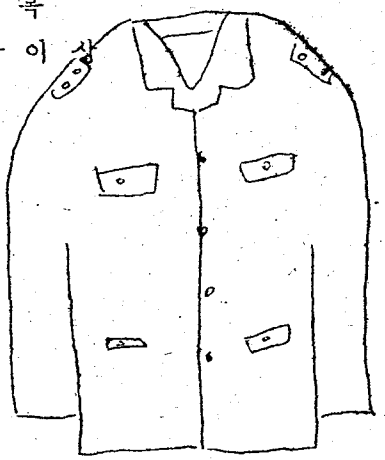

(2) 반 장 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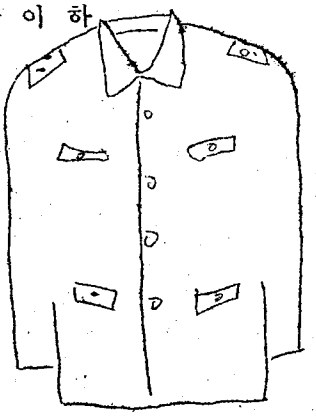

(나) 하 정 복

(1)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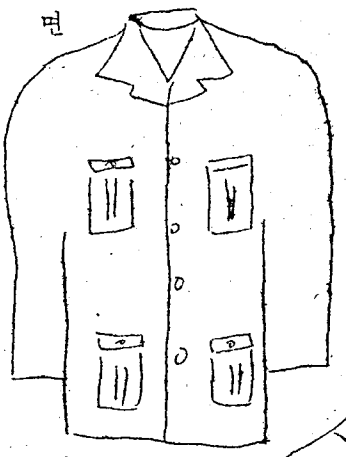

(2)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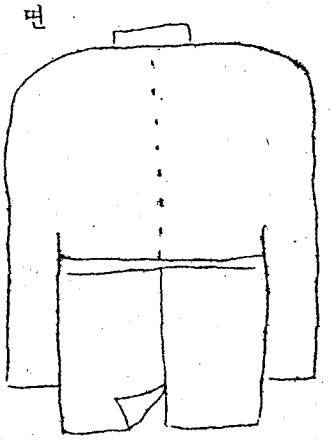

(다) 작 업 복

(1) 상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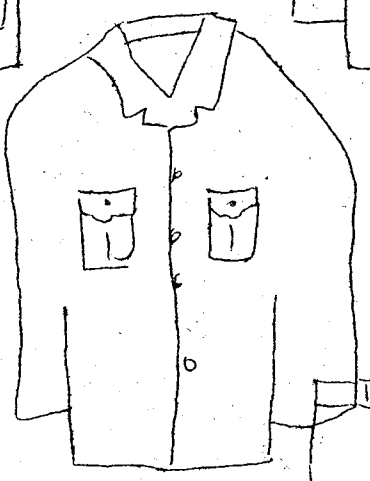

(2) 하 의

ㄱ.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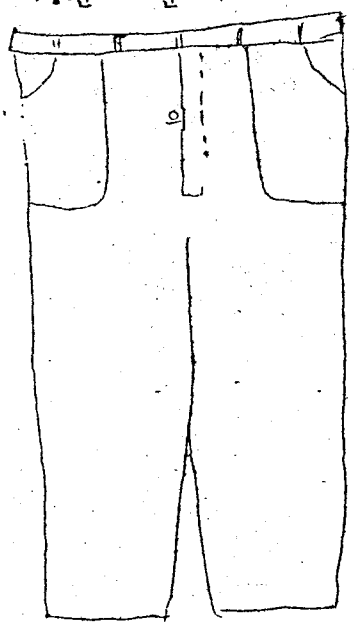

ㄴ.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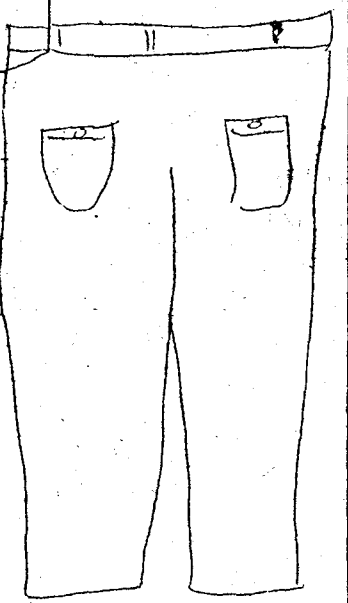

(라) 방 수 복

(1)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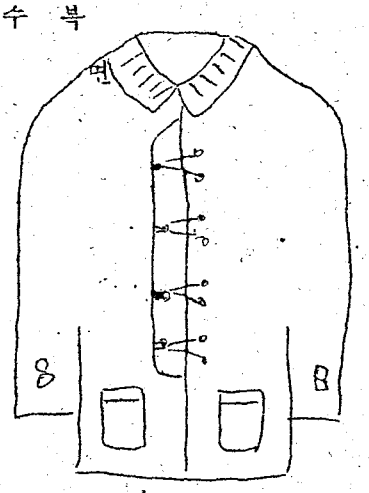

(2)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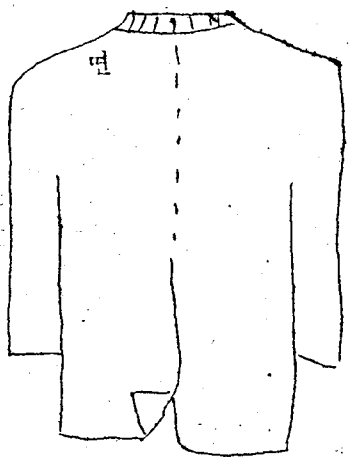

별도 4.

(소 방 화)

(가) 단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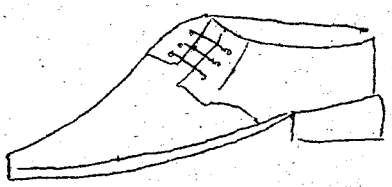

(나) 장 수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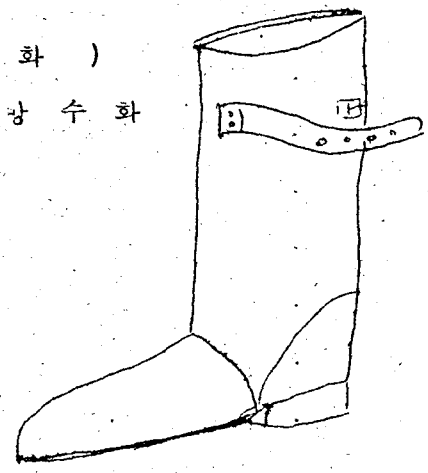

별도 5.

(부 속 물)

(가) 단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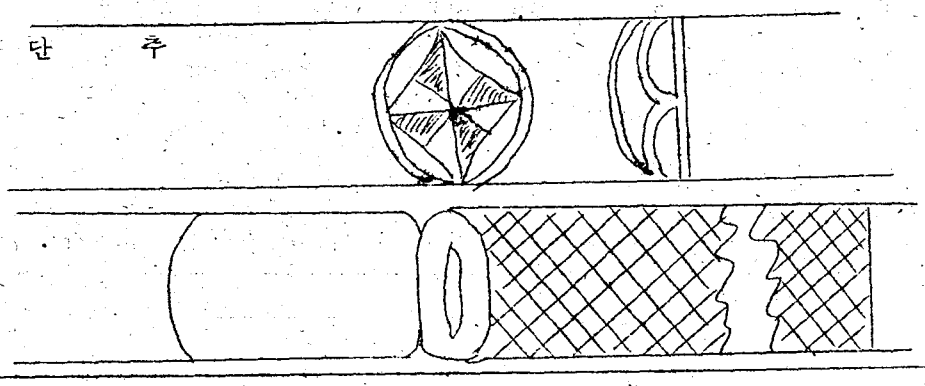

(별표 4)

신 체 장 해 등 급 표

등급	신 체 장 해
1	1. 양안이 실명된 자 2. 양상지의 완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3. 양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5.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과 편하지의 족관절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6.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받아 종신토록취업능력을 잃은자.
2	1. 편안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조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3. 편하지중 족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4.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5.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기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6.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기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3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2. 의기도에 기능에 기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자 또는 용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3. 고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일으켰거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의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5. 양모지 혹은 수지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6. 편상지 또는 편하지의 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잃은자.
4	전 각등급 이외의 신체 장해자

(별표 5)

신체장해등급별장해보상표

등급	
제 1 급 ; 봉급 월액의 10월분	제 2 급 ; 봉급 월액의 9월분
	제 3 급 ; 봉급 월액의 8월분
	제 4 급 ; 봉급 월액의 1월분

(별지 제 1 호 서식)

신 분 증 명 서

(앞면)

2.3센치미터 ---3 센 치 미 터---

3.5 센치미터

사진	신 분 증 성 명 생년월일

4 센치미터

의	제 시 도	호 시 군	용
○ ○ 소 방 대			
직 위			
소			방

(뒷면)

7.5 센치미터

의용소방대원증

계인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혈 액 형

197 . . .

발행관 인

(별지 제 2 호서식)

의용소방대원신분증발급대장

결재			발행번호	사진	발행일자 / 회수일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령인 (인장)

<별지제 3 호서식>

요 양 보 상 청 구 서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경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요양비내용 합계 원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또는 진료소 명칭

직 성명

1. 부상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2. 상병명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소 방 서 장 ㊞

위와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0940

<별지제 4 호서식>

장 해 보 상 청 구 서

1. 소 속(주소)

2.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4. 부상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5. 장해의 정도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직 및 성명

---

1. 장해 발생년월일

2. 장해명

3. 청구금액 및 장해등급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소방서장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제 5 호서식>

장 제 보 상 청 구 서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4. 사망 년월일

5. 사망 경 위

6. 장제보상청구금액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소방서장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및 사망자와의 관계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1. 유족이 청구할 때에는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내연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장제를 행한자가 청구할 때에는 장제사실의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49 호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01호(76.1.20)로 결정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 및 제 2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고양군청 건설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9.2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덕은리 산80-3의 34필
2. 사업의종류및 명칭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한국고압벽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규 섭
4. 시행면적 : 74,256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 76.9
   준공 : 76.12.30.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생략)
8. 허가내용 : 별첨허가도서(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동법제 1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9. 2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 정 조 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선교사 주택단지)	영등포구 등촌동 산84 - 4 외 2 필지	10,106 ㎡ (3,057평)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25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일부 변경 지적 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39 호(76.8.26)로 일부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에 따라 일부 변경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9. 2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 고시 내역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현충공원	관악구 동작동일대	1,247,000	증 1,214,400	2,461,400
〃	상도공원	관악구 동작, 흑석, 사당일부	1,209,618	감 969,600	240,018

※ 도면은 서울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김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5 호 (76.9.3)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에 의거 환지 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34 조 및 제 56 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양서출장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3. 조소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1976.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27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68 조 제 3 항 및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6.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소 또는 거소 성명 : 을지로 3 가 308-5 김재극외 86 명 별첨조서
2. 구분 : 청산금 납입고지서 76 년도 수기분
   가. 납부장소 : 당시 도시정비국 도시행정과
   나. 납부기간 : 76. 10. 10

망 우 3 차 체 납 자 조 서

수납번호	물건지 동	물건지 지번	물건지 평수	과도평	청산금 체납액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1	중화	297 - 4	322.20	5.20	139,817	을지로3가 308-5	김재주
25	〃	297-39,44	67.10	5.20	119,345	중화동 247 - 24	김택중
42	〃	298 - 5	168.20	9.40	225,684	〃 246 - 23	박순복
52	〃	298 - 18	23.30	4.30	109,035	〃 429 --11	최종필
186	〃	321 - 64	16	0.10	3,160	〃 225 - 4	미등기
187	〃	326 - 66	36.30	0.70	22,121	〃 225 - 5	장세창
190	〃	321 - 85	78.40	4.40	141,081	〃 398 - 11	김자건
245	〃	322-106,131	155.10	4.90	156,559	황학동 1	미등기
255	〃	323 - 12	38.30	1.30	44,996	경화동 401 - 83	김순옥
287	〃	323 - 83	41.10	1.10	35,251	휘경동 116	박광웅
311	〃	324 - 16	52.70	1.70	45,010	중화동 417 - 7	여운오
387	〃	324 - 140	38.40	0.80	23,192	〃 418 - 21	진영순
398	〃	318 - 17	20.50	1	29,545	면목동 359	김석숭외 2인
427	〃	318 - 80	30.80	14	522,578		미등기
428-1	〃	318 - 81	36.50	0.10	3,989		〃
518	〃	326 - 114	65.30	0.50	22,051		〃
538-1	〃	325- 6.7	48.60	1.60	48,771	면목동 430- 31	김종기
543	〃	325 - 17	17.40	0.40	12,193	중화동 408 - 48	노양기
555	〃	325 - 35	133.60	0.20	7,295	〃 181 - 28	박희성
586	〃	296 - 46	261.80	5.80	341,800	상봉 347 - 3	최인식

수납번호	물건지 동	물건지 지번	물건지 평수	과도평	청산금 체납액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588	중화	296 - 53	36.40	2.20	82,973	중화동	미등기
644	〃	299 - 79	14.10	0.10	3,576		김재국
710	〃	316 - 19	45.50	0.90	1,766	중화동 242-4	유인옥
807	〃	327 - 74	125.20	13.10	414,759		미등기
845	〃	328 - 36	16.80	0.10	2,490	중화동 403-9	이한기
856	〃	328 - 62	133	2.90	165,486		미등기
882	〃	301-27,37,42	82.40	0.40	16,414		〃
913	〃	302 - 1	81.40	0.60	49,512	중화동 290-13	고근영
920	〃	302 - 15	38.60	0.60	24,867	〃 254-7	강영섭
975	〃	315 - 8,9	40.50	2	78,058	〃 395-7	정평운
993	〃	315 - 48	46.90	2.30	87,774	신설동 116	김수
1040	〃	304 - 1	198.40	4.70	268,384	중화동 282-3	박옥산
1041	〃	304 - 4	21	0.20	8,204	〃	〃
1081	〃	312 - 12	87.60	2.50	98,355	중화동 282-53	김복순
1084	〃	312 - 17	43.20	13.20	519,314	〃 217-14	이옥순
1086	〃	312 - 19	112.91	2.30	111,016	〃 287 - 1	정기영
1138	〃	312 - 108	78.30	9.70	388,630	〃 296 - 47	김효
1171	〃	329 - 15	30.90	0.60	21,887	〃 309 - 6	손주대
1176	〃	329 - 21	38.90	0.30	11,218	〃 309 - 13	
1215	〃	329 - 159	6.30	0.10	3,663	〃	미등기
1283	〃	305 - 6	.20	4	163,256	종로구계동 67-29	엄익용

수납번호	물건지 동	물건지 지번	물건지 평수	과도평	청산금 체납액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1295	중화	305 - 36	45.10	0.10	4,186	중화동 282-2	박옥산
1319	〃	306-24,26,65	7.30	0.10	4,075		미등기
1344	〃	310 - 3	40.80	11.70	503,989	중화동 308 - 31	박병찬
1356	〃	310 - 24	23.10	0.10	3,581	〃 308 - 108	김인호
1459	〃	308 - 1	28.70	0.90	31,865	〃 308 - 1	김대홍
1490	〃	331-102,82	512.40	1.40	80,647	〃 305 - 5	이사용
1492	〃	331-104	34.50	21.10	674,567		미등기
1494	〃	331-110	31.10	10.50	491,169		〃
1539	〃	308 - 9	60.40	0.30	11,749	중화동 329 - 37	김수영
1634	〃	332 - 7	86.90	0.30	11,141	북동 367 - 5	김진하외3인
1654	〃	332 - 48	422.30	5.90	219,114	중화동 381 - 2	미등기
1668	〃	332 - 88	44.90	24.30	1,276,212	중화 381 - 5	한상문
1669	〃	332 - 89	48.60	14.30	682,754	〃 381 - 4	박윤철
1675	묵동	묵동250-7	36.70	1.60	61,755	연희동 181-67	박경재
1734	〃	248-4,5	419.40	8.30	353,173	북동 162 -	문태식
1739	〃	248 - 15	98.60	0.30	10,904	신설동 357 - 14	〃
1764	〃	248 - 67	27.60	16.20	752,572	중화 342 - 17	윤재오
1766	〃	248 - 69	26.07	15.30	714,541	〃 342 - 20	임만조
1767	〃	248 - 70	28	16.60	775,253	〃 242 - 13	〃
1768	〃	248 - 73	28	12.70	591,464		미등기
1769	〃	248 - 74	32.40	11.60	584,698	중화동 425	허
1845	〃	247 - 11	56.10	0.30	9,887	북동 178-15	박황천
1869	〃	247-84,88	49.10	9.70	492,867	중화동 247-8	정광조

수납번호	물건지 동	물건지 지번	물건지 평수	과도평	청산금 체납액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1871	묵동	247-89	29.50	10.60	483,996	중화동 342-	조철원
1872	〃	247-90	113.60	1.	39,459		미등기
1873	〃	247-95	47.10	0.90	30,351		〃
1873	〃	244.10	115.90	1.40	106,696	묵 동 190-10	이금자
1980	〃	243-27	72	2	84,258	묵 동 187-5	김동곤외1인
1984	〃	243-34	34.40	0.70	25,073	〃 174-15	김 태
1992	〃	243-53	32.70	0.30	10,246	〃 174-21	김 태
2009	〃	243-96	84	4.90	175,219	〃 168-22	김동섭외1인
2030	〃	242-56	110.70	0.60	22,510	〃 365-1	미등기
2031	〃	242.59	30.20	0.20	6,754	〃 180-15	〃
2032	〃	242-60	30.60	0.60	20,263	〃 180-16	〃
2033	〃	242-61	30.40	0.40	13,509	〃 180-17	〃
2034	〃	242-65	36.20	0.20	7,204	〃 180-65	〃
2089	중화	291-3	91.90	0.60	25,835	중화동 176	송 수
2161	〃	286-25.27 32.28			114,164	한강로 1-311	서원주
2161	〃	286-25.24	87.50	5.30	271,307		미등기
2163	〃	286-29	145.90	2.60	181,521	삼선동 5가 171	서원주
2229	〃	275-33	48	1.60	60,592		미등기
2236	〃	273-12	28.30	8.90	398,168	중화동 산2-2	박광우
2238-1	〃	273-16	24.40	7.10	313,213		미등기
2263	〃	274-65.27.30	168.20	17.30	687,363		〃
2266	〃	274-28	61.50	2.50	107,720	중화동 산2-15	백준부
2130-1	〃	290-19.20			20,600	〃 163-4	차종현

◎서울특별시공고제 228 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각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68 조제 3 항 및 지방세법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6. 9. .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소또는거소성명 : 중구남산동 2 가 25-8 김정욱외 32 명 별첨조서
2. 구분 : 청산금납입고지서 76 년도 수기분
   가. 납부장소 : 당시도시정비국 도시행정과
   나. 납부기간 : 76.10.10. 끝.

체 납 자 조 서

수납번호	물건지 동	물건지 지번	물건지 평수	과도폭	청산금 체납액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32	사당	446 - 119	100	15.10	114,049	남산동 2 가 25-8	김 정 욱
42	〃	446 - 49/04	83.20	24.60	180,337	충암동 124-61	이 종 현
56	〃	454 - 2	107.40	28.40	237,614	사당동 454-34	이 정 삼
65	〃	454 - 11	124.60	15.10	122,518	하월곡동 81-43	이 건 중
77	〃	484 - 30/29	72.80	4.90	83,368	세종로 81-6	한국예술단체연합회
						인현동 2 가 181-54	조 규 옥
79	〃	484 - 32	142	14.70	100,502	사당동 484-32	김 윤 식
87	〃	484 - 69 / 503 - 5	145.90	9.20	30,942	이문동 256-159	최 경
88	〃	산 55 - 6	977.90	245.50	1,671,337		미 등 기
96	〃	454 - 36	119.80	33.20	253,620	신설동 154-23	이 영
107	〃	454 - 51 / 483 - 8	98.60	15.20	120,588	상도동 331-103	천 용 준

0945

수납번호	물건지 동	물건지 지번	물건지 평수	과도평	청산금 채납액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109	사당	483 - 6	108.10	25.50	174,057	아현동 408	김 홍 수
114	〃	484 - 5	111.30	19.60	133,674	당산동 4가 32-91	김 건
121	〃	484 - 10 14	130.20	21.30	168,859	녹번동 120-1	강 영 룡
125	〃	484 - 53	113.50	9.10	60,340	신림동 662	왕 명 원
127	〃	484 - 51	112.40	15.6	103,551	홍제동 287-133	장 민 호
128	〃	484 - 50	117	15.10	100,478	전농동 46	김 병 식
134	〃	434 - 44	110.90	22.60	149,283	장충동 1가 96	김 재 명
146	〃	484 - 19	93.60	12.90	88,080	경운동 66-3	고 영 숙
148	〃	484 - 17	97.80	15.40	104,815	충북청원부용부강리 4-5	조 대 영
152	〃	483 - 12 484 - 28	47	15.70	106,919	쌍림동 162	예 대 웅
157	〃	484 - 58	93.30	10.10	65,644	을지로 3가 176-1	최 영 순
159	〃	484 - 60	125.80	61	40,011	서교동 326-12	김 규 태
160	〃	454 - 54	89.10	9.90	80,009	후암동 140-16	이 인 자
163	〃	451 - 3	85.7	14.20	173,924	동교동 44-18	김 정 호
170	〃	451 - 15	89.40	10.40	75,890	이촌동 302-70	현 동
172	〃	449 - 43	112.50	20.80	154,436	청파동 3가 118-93	김 순 례
174	〃	449 - 45	90.10	6.10	44,294	삼선동 4가 353	이 천 재
178	〃	449 - 61	118.60	21	155,010	장충동 2가 186-40	박 영 애
185	〃	446 -63 90 30	101.90	38.10	493,497	개봉동 33-9	박 성 모
186	〃	448 - 2	173.70	13.70	100,795	사당동 448-2	허 철
189	〃	산 56-2	480.90	6.90	47,196	국	
190	〃	484 - 56	84.30	5.90	38,572	금호동 1가 165	이 의 한
173	〃	449 - 44	91.10	4.50	32,629	청파동 3가 118-93	김 순 례

◎서울특별시공고제 230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영등제2지구 및 제2지구추가 및 영등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서울특별시공고제 192 호 (76.9.23)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제56조와 서울특별시영등제2지구 영등제2지구추가 및 영등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1조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을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일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예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한다.

첨부: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도면 : 별첨 (생략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1976.9.28

서 울 특 별 시 장

◎영등포구공고제 354 호

공 인 신 조 및 분 실 공 고

1. 1976.9.25 12:30분 영등포 제1동장직인을 분실하였기 서울

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2항 및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가. 분실직인은 1976.9.25 12:30 이후 직인날인은 무효로 함.

나. 신조공인사용일 1976.9.27 09:00부터

1976. 9. 27

영등포구청장 김 택 수

영 등 포 제 1 동

사 령

◎ 1976.9.21

도시가스 사업소 주사보 김정상 지방행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6.6.5 (발령제353호) 징계처분 (감봉6월)을 동일자로 번경 견책에 처함.

◎ 1976.9.23

서울특별시 이사관 서기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서기석

서울특별시 이상윤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1976.9.23~79.9.22)

◎ 1976.9.28

연료과 주사보 최락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6.9.29

양묘장 지방행정주사 염수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76.6.22자 발령제391호 징계처분 (견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녹지국 공원과장직대 농림기좌 피상진

농림기정에 임함.

녹지국공원과장에 보함.

종 로 구
보 건 소 소장직대 이 종 범
지방의무기정에 임함.
종로보건소장에 보함.

정　　정

시보 제 573 호 (76.9.18) 에 게재

된 서울특별시훈령 제 458 호 서울특별시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1976.9.27

서 울 특 별 시 장

조　　항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훈 령 제 목	서울특별시사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
제 3 조제 2 항	자격적발여부	자격적합여부
제 7 조	제 3 조 이하의	제 5 조 이하의

서 울 특 별 시 장

0947